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7호, 2024. 12.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I.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440,633	80,240
2등급	2,932,530	96,410
3등급	3,424,430	112,580
4등급	3,916,320	128,750
5등급	4,408,220	144,920
6등급	4,900,120	161,100
7등급	5,392,020	177,270
8등급	5,883,920	193,440
9등급	6,375,820	209,610
10등급	6,867,710	225,780
11등급	7,359,610	241,960
12등급	7,851,515	258,132

II.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